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보다 실효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함
(안 제7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, 제9호, 제10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안건 개정은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